

약취방지법시행령안

2004. 5

환 경 부

1. 의결주문

악취방지법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이 제정(2004. 2. 9, 법률 제7170호)됨에 따라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도입을 위하여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악취방지를 위하여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시·도지사로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개선계획서 및 제출기한 등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도입을 위하여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악취방지를 위하여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 나. 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시·도지사로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 악취도 저감을 위한 개선계획 및

설계도, 공사기간 및 공사비가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개선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악취관리지역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 개선권고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 악취도 저감을 위한 개선계획 및 설계도, 공사기간 및 공사비가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개선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

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라. 기타 :

대통령령 제 호

악취방지법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치기간의 연장 사유)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한 악취방지 조치기간의 연장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도입을 위하여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신기술로 지정받은 악취방지기술로 전면 교체하는 경우로서 악취방지시설의 신설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중단시 제품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개선기간) ①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 · 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유
2. 악취도 저감을 위한 개선계획 및 설계도
3. 공사기간 및 공사비

제5조(개선명령 이행보고 및 확인)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악취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악취검사기관에 동 검사를 지시하거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과정금 처분대상 배출시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용을 중지할 경우 사육하고 있는 가축 등의 폐사가 우려되는 동물사육시설
2. 사용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안에 투입된 원료·부원료·용수 또는 제품(반제품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제7조(조치기간)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권고를 하는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조치계획서의 제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

항을 명시한 조치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유
2. 악취도 저감을 위한 개선계획 및 설계도
3. 공사기간 및 공사비

제9조(조치이행보고 및 확인)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권고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악취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악취검사기관에 동 검사를 지시하거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20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악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정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건설계획의 변경
2. 악취발생원인의 사전 차단을 위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조성계획의 변경
3.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및 지원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공정시험방법의 제·개정 및 고시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에 한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및 검사수수료 설정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5. 법 제22조제3호의 자에 대한 청문
6. 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에 한한다)

② 시 · 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 · 도지사가 지도점검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명령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 징수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6.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 검사 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은 제외한다)
7. 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대한 청문
8.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은 제외한다)
9.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의 접수
10.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이행보고의 접수 및 확인

제12조(보고) ①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 및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 · 도지사를 경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 ①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 · 이의방법 ·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수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대기환경 보전법시행령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 영 제4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선계획서 또는 조치계획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제3항중 “배출 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를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9호자목을 삭제하고 차목중 “제4호의2·제4호의3 및 제5호”를 “제4호의2 및 제4호의3”로 한다.

별표 3중 악취란 및 악취농도별 부과계수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

②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중 악취란 및 악취농도별 부과계수란을 각각 삭제한다.